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 번호		접수 일시		처리기간 5일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택시운전 자격증번호		면허연월일		
	사업면허번호		자동차번호		
대리운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택시운전 자격증번호		발급기관		
대리운전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개월간)			
대리운전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개인택시운송사업자)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 관한 사항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명 2. 진단서(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대리운전자에 관한 사항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전경력을 증명 하는 서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8항에 따른 양수자만 해 당합니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제3항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 3.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9항에 따른 양수자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대리운전자에 관한사항	1. 자동차운전면허증 2. 운전경력증명서(무사고 운전경력을 포함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대리운전자가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자동차운전면허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합니다)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운전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이 가능한 경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습니다.
 - 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에서 상근직 임원(지부장과 조합장을 포함합니다. 이하 이 목에서 같습니다)으로 선출된 경우. 다만, 급여를 받는 상근직 임원은 조합 규모, 조합원 수, 급여수준, 업무내용 및 적정 상근직 임원 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호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 단체의 장(지부장 및 지회장을 포함합니다)으로 선출되어 급여를 받지 않고 근무하는 경우
-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대리운전하게 한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에 따라 1차 적발 시 운행정지 60일, 2차 적발 시 사업면허취소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리운전을 하려는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